ZINUS

㈜지누스

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



【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】

① 모든 임종업원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.
②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하여는 부서 전환, 징계,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① 직장 내 성희롱을 관련하여 그 피해 종업원에게 부당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.

【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교육 】

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종업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실시하며, 모든 종업원은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.

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】
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
1.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
2.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회사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
3.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
4.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종업원의 고충 상담 및 구제절차
5. 기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
【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】

①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예시
1. 육체적 행위 : 신체부위의 접촉 등
2. 언어적 행위 : 음란한 농담 등 상스러운 이야기 등
3. 시각적 행위 : 음란한 사진, 그림, 낙서, 출판물 등
4.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
②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: 채용탈락, 감봉, 승진탈락, 전직, 정직, 휴직,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하는 것
③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의 예시 : 위협적,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으로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것

【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조치 】

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회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.

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(이하 "피해근로자등"이라 한다)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사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⑥ 회사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
2.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
3.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
4.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
5.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
6.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
7.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

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,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【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】

① 종업원이 고객의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껴 해당 종업원이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근무 장소 변경, 배치 전환,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① 회사는 종업원이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